

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33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- 현 장학금지급조례의 장학금액은 '93년도에 정한 것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 하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제6조 장학금액을 현실에 맞게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.

첨 부

-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신규조문 대비표 1부

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중 “60만원”을 “100만원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6조(장학금액) 중 ·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60만원으로 한다.	제6조(장학금액)

